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취약계층에게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에 대한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는 40,200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ergo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세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 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 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